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김선민 ·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이 경우 대통령 사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일차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의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그 위배의 정도는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탄핵사유

가. 경과

- 1) 국회가 2018. 10. 18.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는 2024. 10. 17. 만료되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24. 12. 23. 및 2024. 12. 24. 양일간 개최하여, 2024. 12. 24.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의 후임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대통령에게 선출사실을 통지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2024. 12. 24.경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2) 피소추자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4. 12. 27.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나9).

3)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 12. 27.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025. 1. 1.자로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4)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24. 기각결정을 하였고(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하였다.

나. 피소추자에 대한 직무상 새로운 작위의무의 발생 및 그 불이행

1) 2025. 1.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국회가 추천가결한 마은혁은 여전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을 통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이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의 문언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는 등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며, 다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므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앞서 본바와 같이 피소추자는 2025. 3. 24.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였으므로 아직 미임명 상태에 있는 마은혁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한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헌법질서의 손상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 피소추자의 재판관 임명거부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직무복귀 이후의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라. 헌법 및 법률위반의 중대성

2024. 10. 17. 헌법재판관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고, 2025. 4. 18.에는 재

판관 중 2인도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피소추자는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도록 했어야 했다. 더구나 2024. 12. 14.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어 재판관 중 2인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2025. 4. 18. 이전 선고가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피소추자는 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아니하여 헌법기관 구성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장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견잡을 수 없이 극대화될 것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국회는 국무총리 한덕수를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른 것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